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회)	

습지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습지보호지역 내 도서지역을 연결하는 길이 2km 이내의 가공전선로의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습지보호지역 내 가공전선로에 대한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도서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적용배제 사항 추가(안 제11조의2)

습지보호지역 내 섬과 섬, 섬과 육지 사이 길이 2km 이내의 가공전선로의 설치를 허용하되, 생태계 피해 저감조치를 포함한 설치 방법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만 행위제한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도록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항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섬과 섬, 섬과 육지 사이 2km 이내의 가공전선로(단, 해저 송전선로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로서 생태계 피해 저감조치를 포함한 설치 방법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 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행위제한규정의 적용 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①· ② (생 략) ③법 제13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 략)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 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시설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가. ~ 다. (생 략) <u><신 설></u>	제11조의2(행위제한규정의 적용 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2. (현행과 같음) 3. ----- ----- ----- -----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u>라. 섬과 섬, 섬과 육지 사이</u> <u>2km 이내의 가공전선로</u> <u>(단, 해저 송전선로의 설치</u> <u>가 어려운 경우로서 생태</u> <u>계 피해 저감조치를 포함</u> <u>한 설치 방법에 대해 해양</u> <u>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u> <u>에 한한다)</u>